

2025년도 기업가치+(플러스) 훈련 사업 변경 공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0조,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등에 따라 운영하는 2025년도 기업가치+(플러스) 훈련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○ 주요 변경사항

- 동일 지역 및 동일·유사업종 세부기준 마련

○ 적용시기: '25년 5월 5일 이후 실시과정부터 적용

2025년 4월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붙임2

2025년도 기업가치플러스 훈련 사업 안내

2025년 기업가치+(플러스) 훈련 사업 안내

1. 사업 목적

- 훈련역량이 있는 대표기업 주도로 공동훈련을 실시하여 참여기업의 자체훈련 경험 축적 및 기업 간 훈련역량 격차 해소

2. 추진 근거

- 「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」 제20조(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)

3. 사업명 : 기업가치+(플러스) 훈련

- 동일 지역 내 동일·유사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합동훈련(공동훈련)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제공 및 훈련실시를 지원하는 사업

4. 주요내용

○ (지원대상) 우선지원대상기업

* 교육·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, 협·단체 등은 지원대상 제외

○ (지원내용) 동일 지역 내 동일·유사업종 기업 간 집체·공동훈련 지원

- (동일지역) 동일권역(6개 권역*) 기준으로 동일지역 여부 판단

* **6개 권역:** ① **수도권**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, ② **강원권**(강원특별자치도), ③ **충청권**(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), ④ **경상권**(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북도, 경상남도), ⑤ **전라권**(광주광역시,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), ⑥ **제주권**(제주특별자치도)

- (동일·유사업종)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* 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·유사업종 판단

*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,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 가능

*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작성·

① 고용행정통합포털: “공통(조회/관리)>사업장 조회/발급>사업장(하수급) 조회>고용보험>고용보험(사업장별)>사업장별 고용보험 조회”

『증보 판 학이바버』

▶ 총 5자리를 구성된 코드번호 중 대분류(1자리) 및 중분류(2자리) 코드번호가 독립해야 함

분류코드 구성체계	동일·유사업종 판단 예시
2 4 1 1 1(제철업) 대부분을 ↘ ↗ 충북부로	제철업(24111), 강관 제조업(24132) → 동일·유사 업종임

- 공단 관할 지부·지사의 컨설팅 제공 및 훈련실시 지원
- 참여기업 수요 파악을 통해 실습 위주의 훈련프로그램 운영
- (훈련유형·방법) 자체·집체 공동훈련, 재직자 향상훈련
 - 원격대체(비대면 쌍방향) 훈련방식 불가
- (참여신청) 공단 관할 지부지사로 신청(연중상시)
- (훈련시간) 4시간 이상 실시
- (훈련장소) 훈련생 1인당 1.5m² 이상 충족
 - 참여기업 및 산업단지 내 협회·협의회 등의 장소 활용
- (훈련정원) 60명 이내 단 공단 관할 지부·지사 인정을 받아 정원 초과 가능
 - 참여기업 2개 이상(대표기업 포함), 기업별 참여인원 1~10명 이내
- (훈련실시) 대표기업에서 과정 및 훈련생 등록 등 행정절차 수행
 - 동일기업의 대표기업 참여는 5회 이내로 제한, 신기술훈련은 제한 없음
(단,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판단 하에 10회까지 대표기업 참여 가능)
- (모니터링) 소속기관 담당자 방문 모니터링 및 수강확인 문자(ACS) 활용
- (만족도 조사) 소속기관별 만족도 조사 의무 실시
- (훈련비용) 대표기업에서 훈련비 신청·수령 후 참여기업에 배분
 - 훈련 소요비용은 참여기업별 훈련생 수 따라 균등하게 부담
 - 훈련비(정부지원금)는 참여기업 개별 사업주훈련 한도금액에서 차감

5. 훈련절차 및 담당주체

